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4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3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자립준비청년등의 안정적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와 ‘자립’의 동행에 초점을 둔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

(안 제4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아동청소년과

라. 입법예고 : 2025. 2. 3. ~ 2025. 2.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 자립수당 지원사업
3.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4.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5. 경제적 자립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6.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7.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제5조제1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리 및 소재 시설에서 퇴소한 자에 한하며, 제5조제2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